KOSHA GUIDE

P - 99 - 2023

자체감사에 관한 기술지침

2023. 8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는데 참고하거나 사업장 안전·보건 수준향상에 필요한 기술적 권고 지침임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○ 작성자 : 유 철 진 ○ 개정자 : 이 근 원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기술실 오상규

- 제·개정 경과
 - 1995년 9월 화학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
 - 1995년 10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
 - 2000년 6월 화학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
 - 2000년 7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
 - 2007년 10월 화학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
 - 2007년 11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
 - 2012년 7월 총괄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반영)
 - 2023년 7월 화학안전분야 표준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반영)
- 관련규격 및 자료
 - 국제노동기구(ILO) Convention No. 174, "The Prevention of Major Industrial Accidents", 1993
 - 미국 공정안전관리제도 규정(29 CFR 1910.119), "Process safety management of highly hazardous chemicals"
 -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-MS 인증업무 처리규칙
-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 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(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)
- 안전보건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 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(www.kosha.or.kr)의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 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,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23년 8월 24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<u>목 차</u>

1.	목적1
2.	적용범위1
3.	용어의 정의1
4.	감사계획1
5.	감사팀 구성2
6.	감사시행3
7.	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후속 조치4
8	무서보존5

자체감사에 관한 기술지침

1. 목적

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될 내용 중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(이하 "보고서"라 한다) 내용을 각 담당부서가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감사(이하 "감사"라 한다) 계획을 수립하고, 시행하는데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4. 감사계획

4.1 감사계획수립

- (1) 감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감사를 시행하기 전에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(2) 감사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(가) 감사일정
- (나) 감사팀 구성 및 감사요원의 역할 및 책임
- (다) 감사대상 범위(사업장, 공정 조직)
- (라) 감사기준

- (마) 감사절차
- (바) 감사보고서 작성 및 조치

4.2 감사점검표

- (1) 감사점검표는 감사요원이 보고서의 전 항목을 감사하는데 필요한 상세 사항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작성하며,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KOSHA GUIDE (자체감사 확인점검표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)에 따른다.
- (2) 감사점검표는 감사내용 및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내용을 기재할 수 있어야 한다.
- (3) 시정내용을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.
- (4) 감사요원들의 소속과 성명을 기입할 수 있도록 한다.

4.3 감사주기

- (1)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에 규정한 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· 확인하기 위하여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(2)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(가) 중대재해 발생 또는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(나) 공정운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
- (다)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
5. 감사팀 구성

5.1 감사요원

- (1) 감사요원은 가능한 감사대상조직을 공정하게 감사할 수 있도록 자체 감사 요원 자격기준에 따라 적합하고 독립적인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.
- (2) 감사팀은 감사대상 공정의 크기, 복잡성 및 감사범위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1인 이상의 기술자로 구성한다.

- (가) 공정설계 또는 공정 기술자
- (나) 계측제어, 전기·방폭 기술자
- (다) 검사·정비 기술자
- (라) 안전관리자
- (3) 감사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- (가) 감사원칙, 절차 및 기법 등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 및 숙련도 정도
- (나) 공정안전관리,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및 조직의 운영상황의 이해
- (다) 학력, 업무경험, 감사요원 훈련 및 감사 경험 정도

5.2 감사팀 조직

- (1) 감사요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팀장으로 지정한다.
- (2) 감사팀장과 팀원 및 팀원 간에는 감사대상 또는 범위에 대하여 역할과 책임을 정한다.

6. 감사시행

6.1 서류감사

- (1) 보고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서류로 확인한다.
- (2) 감사절차와 점검표를 사용하여 보고서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, 수행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한다.
- (3) 서류 내용의 적정성, 빈도의 적합성 및 효율성 등이 보고서에서 요구하는 목표와 목적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.

6.2 현장감사

- (1) 안전·보건정책, 안전운전절차 및 작업허가절차 등에 대한 현장에서의 실제 수행사항을 확인한다.
- (2) 현재 적용중인 안전운전지침 및 절차서 등과 같은 각종 기준과 절차가 현재의 공정 및 설비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다.

(3) 운전설비에 어떠한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.

6.3 면담

- (1) 사업주로부터 현장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의 공정관련자를 샘플링하여 면담하다.
- (2) 면담을 통하여 사업주를 비롯한 경영층은 기업 경영정책에 안전보건경영의 반영유무, 공정안전관리의 필요한 사업주 책임의 이행 등 공정안전관리의 이행수준을 평가한다. 또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는 안전작업수칙, 안전작업 절차 및 비상조치계획상의 담당업무 내용을 숙지하고, 실천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.

6.4 감사 평가

- (1) 감사 평가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여 실시하되, 그 자료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 해당자에 질의를 통해 감사원이 확인하여 평가한다.
- (2) 관련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검토하되, 모든 자료들을 전부 검토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감사결과에 신뢰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샘플감사를 할수 있다.
- (3) 감사팀은 감사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철저한 공정안전관리의 시행과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시정요구 사항들을 문서화 하여야 한다.

6.5 부적합 또는 권고사항

- (1) 감사결과 보고서에 규정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, 설비에 결함 등이 발견 되면 해당 부서장의 동의를 받아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6.2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2) 그 밖에 공정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선 권고할 수 있다.

7.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후속 조치

7.1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

- (1)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(가) 4.1의 (2) 감사계획서에 따른 실시 결과
 - (나) 감사 평가결과
 - (다) 부적합 또는 권고사항 내용
 - (라) 감사 결론
- (2) 감사팀장은 감사가 종료되면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보고 하고, 사업주는 그 내용을 사내방송·사내보·게시 또는 조회 등 기타 적절 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.

7.2 후속조치

- (1) 감사팀장 또는 감사주관 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장에게 기한을 정해 시정조치를 요구한다.
 - (가) 6.4에 따른 평가결과 일정 점수 미만인 사항
 - (나) 6.5에 따른 부적합 또는 권고사항
- (2)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부서의 장은 후속조치한 후 그 결과를 감사팀장 또는 감사주관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, 조치를 요구한 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야 한다.
- (3) 기계기구 설비 또는 운전절차를 변경해야 하는 후속조치는 위험성 평가 및 변경요소관리절차에 따라 개선한다.
- (4) 감사에서 제시된 평가·분석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조사·연구가 필요하거나 정밀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조사·연구가 되어야 한다.

8. 문서보존

- (1) 감사계획, 감사결과 보고서 및 시정조치요구서 등 감사관련 보고서는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.
- (2) 자체감사 보고서는 3년 이상을 보관하여야 한다.

안전보건기술지침 개정 이력

□ 개정일 : 2023. 8. 24.

○ 개정자 : 안전보건공단 전문기술실 오상규

○ 개정사유 :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령조항 삭제

○ 주요 개정내용

- (1. 목적)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2(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), 같은 법시행령 제 33조의 6(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)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0조의 2(공정안전보고서 세부내용 등)"법령 조항 삭제